심사경과 보고서

법 제 처
www.moleg.go.k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의 수당으로의 변경에 의한 사망일시금 지급 규정의 정비에 따른 부칙 관련 심사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원안의 내용

● 4·19혁명공로자(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자*로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아닌 자)에게 보상금 대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5363호, 2018. 1.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상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던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안 제27조의4 신설, 별표 4 제4호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에서 4·19혁명공로자를 제외(안 별표 6 제2호)하면서,

* 4·19혁명 관련자에게 처음 건국포장을 서훈할 1962년 당시에는 현행 「상훈법」이 제정(1963. 12. 14.)되기 이전으로 구 포장령(1949. 6. 6. 제정, 1964. 3. 24. 폐지)이 적용되었으며, 4·19혁명 관련자의 경우 위 포장령상 포장(건국포장, 면려포장, 방위포장, 문화포장, 공익포장, 식산포장, 근로포장)의 종류 중 성격이 가장 가까운 '건국포장'을 수여하였고, 이후 혼란방지를 위하여 계속 건국포장을 수여하였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제17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 ③ (생 략)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영을 2018년 1월 16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지급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둠.

* 이에 대한 부처에서는 2018년 1월 보상금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2018년 2월분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때부터 수당으로 지급하고, 2월분 수당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의도로 부칙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나,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원 안
제2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사망일시금)** ① ---------- ----------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6]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 제1항 관련)
사망자별	사망자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공로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6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4·19혁명공로자 보상 개요

● 4·19혁명공로자는 2000. 12. 30. 법률 제6339호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로 추가되었으나, 추가 당시에는 보상금(현재 보훈급여금,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 변경)의 지급대상은 아니었고, 2012. 2. 17. 법률 제11330호의 개정(2012. 7. 1. 시행)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 2013. 1. 14. 대통령령 제24309호로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15만원)과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지급액(지급액 92만7천원)을 정하면서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2012. 7. 1.부터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309호, 2013. 1. 14. 공포·시행)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보조금 및 학습보조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4 · 19혁명공로자에 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부터 적용한다.

- 이에 따라 2012. 7. 1.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2. 7. 1. 이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였음.

검토 필요 사항

● 국가유공자법 제17조에 따르면,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변경된 이상 시행령 상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4·19혁명공로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 4·19혁명공로자가 법률 제15363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금이 아닌 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의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4·19혁명공로자가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4·19혁명공로자 유족에게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일 이후에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소관 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2월 보훈급여금을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인바, ② 2018년 2월 보훈급여금 지급 시*까지 시행령이 개정될 수 없는 상황(2018. 2. 5. 입법예고 만료 후 각종 평가 진행)에서 시행령 개정 전에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기초하여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이 아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8. 2. 15.이 설연휴인 관계로 2. 14.에 지급하면 되나 보훈처에서는 2. 9.에 지급하였음.

- ③ 2018. 2. 9. 4·19혁명공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4·19혁명공로자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에서 보상금을 받은 4·19혁명공로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보도록 한 간주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363호, 2018.1.16.〉

제3조(4 · 19혁명공로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 · 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4 · 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본다.

검토 의견

● 4·19혁명공로자가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사망일시금 지급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i) 4·19혁명공로자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즉, 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아직까지 사망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ii) 4·19혁명공로자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일인 2018. 1. 16.부터 2018. 1. 31. 사이에 사망한 경우

iii) 4·19혁명공로자가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2월분 보훈급여금(수당)이 지급되기 전(2018. 2. 1.부터 2018. 2. 8.)에 사망한 경우

1)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후 사망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4·19혁명공로자도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 4·19혁명공로자가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일시금의 수급 요건인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①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검토보고서상 부칙의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이 없어 그 취지를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당시 개정 취지가 4·19혁명공로자에게 공헌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즉, 인상된 수당 지급)이라는 점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9조 상 보훈급여금의 원칙적인 지급일이 매월 15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 해당 부칙 규정이 보훈급여의 명칭 변경에 따른 법령상의 제반 사항 등을 일치시키는 한편,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15일 이후에 공포·시행될 경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수당 지급의 추가 요청을 제한하여 보상금과 수당의 2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② 따라서,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4·19혁명공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 지급과 관련된 다른 규정을 검토할 때 간주 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4·19혁명공로자를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법률 관계를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으나, 그에 따라 4·19혁명공로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부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특히,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사망한 4·19혁명공로자 관련하여, 침해적인 진정소급입법의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은 4·19혁명공로자 유족에게 대한 사망일시금 환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망일시금의 신청에 대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황(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의 시효는 인정됨)에서 청구 시점에 따라 사망일시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원칙적으로 4·19혁명공로자가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 요건이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2018년 2월 수당 지급 가능 여부

●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 국가유공자법을 반영하여 2월 중에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 대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보훈급여금 지급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인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이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급여금의 지급 명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시행령 상 지급 금액이 30만원*으로 동일하고, 지급 절차에도 변경이 없어 대상자에게 보상금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로 불리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는 점,

*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보상금에서 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2018년 지급 수준을 17만3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그 금액을 2018년 수당 금액으로 유지함.

법 제 처
www.moleg.go.kr

- 4·19혁명공로자가 보상금 대신 수당을 지급받은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다소 불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지급 대상에 있어서는 보상금·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이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에 이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시행령에서 4·19혁명공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비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시행령 상 보훈급여금 명칭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4·19혁명공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사망일시금 지급 가능 시점 관련

●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일인 2018. 1. 16.부터 2018년 2월 분 수당을 받기 전 기간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간 중 4·19혁명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 보훈급여금이 월 단위(월액)로 지급되고,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일 전인 2018. 1. 15.에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개정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3조의 간주 규정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1. 15.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기간 중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신뢰에 더욱 부합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 2018년 2월 중 지급되는 수당은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2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2. 1.부터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부처에서도 같은 입장임.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또는 그 이전일)에 지급되지만, 해당 월의 일부만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도 해당 보훈급여금이 지급됨(예를 들어 2월 8일 사망하여도 2월분 보훈급여금이 지급됨).

심사안

● 따라서, 4 · 19혁명공로자가 2018. 1.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과조치 규정을 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거주자 등 법률이 개정된 후 최초로 지급되는 2018년 2월 분의 수당을 차후에 수령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에 관한 표현과 관련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훈급여금의 수령과 관련된 시점이 아닌 특정 시점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부칙을 마련하였음.

부 칙 안

제2조(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4 · 19혁명공로자가 2018년 1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심사경과 보고서

법 제 처
www.moleg.go.k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사기관의 현지조사 관련 규정 심사

(원안 제19조의3제2항 관련)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원안의 내용 및 취지

● 원안은 수입신고 시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원 안
〈신 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생 략) ② 검사기관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검토대상

●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검사기관이 목재제품 등을 생산한 원산지 국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우선 **소관 부처**에서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업자가 목재제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양한 형식, 체계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검사기관이 해당 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해당 서류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검사기관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에 대한 현지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수입검사 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먼저, 법 제19조의3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되, 관계 서류의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바, 이는 서류 검사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한국임업진흥원 및 관련 공공기관 등 한정된 기관에 맡기려는 것으로서 그 수행 사무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검사(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

– 반면, **원산국에서의 현지조사는 해당 서류의 검사라기보다는 국내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 조치**로 보임.

● 그렇다면, 서류검사의 범위를 넘어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현지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로서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라고 할 것인데,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조사의 수권(授權) 규범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려면 별도의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1].

● 아울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외국 현지에서의 조사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등과 같이 **개별법상의 근거를 명시하여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서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하위법령에 의한 행정조사 권한의 창설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임.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만, 원안과 같이 법률의 근거 없이 외국에서의 현지조사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하여 이를 삭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원안을 통해 **내실있는 수입검사 제도를 실시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관계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은 분명 있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협조를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수 밖에 없고,
- **주권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 현지에서의 조사는 외국 관할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33조제1항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한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세관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외국세관등의 회신내용에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원안은 삭제하되, 수입신고의 절차·방법을 부령으로 위임한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시행규칙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함.
- 산림청장이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발급한 국가 등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